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5-37
------	-------

제출년월일 : 2015. 5.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투자심사 정의 규정(안 제2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의 투자사업에 대해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것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

2. 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안 제3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 공무원 :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도시환경국장
- 민간위원 : 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

다.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규정 마련(안 제4조)

-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해당위원 참여 배제

라.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간사와 서기를 정함(안 제5조 및 제7조)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 부득이한 경우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 수행 곤란 시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
- 간사 : 기획예산과장, 서기 : 예산팀장

마. 위원회 운영 및 자료제출·설명요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제8조)

- 투자심사 기능보완을 위해 분야별 사전심사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음
-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해 현지 방문하거나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가능

바.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안 제9조)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및 제32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지방재정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5. 3. 12. ~ 4. 1 (제출된 의견 없음)

2)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 권고사항 있음

- 평가기준 : 접근성과 공개성

- 개선사항 : 위원회 업무처리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조치사항 : 권고사항 반영(안 제6조제2항 신설)

구청장 방침	심의회 상정안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생략) <u><신설></u> ②·③ (생략)	제6조(위원회 운영) ① (구청장 방침과 같음) <u>② 위원회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u> ③·④ (구청장 방침과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투자심사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투자심사”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의 투자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 :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도시환경국장
2. 민간위원 : 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투자심사 기능 보완을 위해 분야별 사전심사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사전심사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예산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위원회의 위원은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조사를 목적으로 현지를 방문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